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br>람 | 기관위원장 |
|        |       |

제936호 2013. 1. 4.(금)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14

###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350호 농림수산사업 신청 공고 ----- 16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21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23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22호 201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 25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23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공고 ----- 26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17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17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

원으로 재직할 경우

-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180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181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를 “법 제68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3항의”를 “법 제70조제1항의”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삭제한다.

제5조제2호 중 “영 제4조제2호의”를 “영 제70조의11제2항의”로 한다.  
제6조 중 “기반시설부담금 ”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1182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
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예술·환경·교통·교육·사회복지·법률 등에 관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사임을 표명한 경우
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시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회의·간담회 등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350호

## 농림수산사업 신청 공고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344호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농업관련 지원 (보조+ 융자)사업을 추진할 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림수산사업개요 :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관련(보조· 융자)사업
2. 신청대상사업 : 친환경비료지원사업 외 19종  
 ※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서 열람 요망
3. 신청서 접수기한 : 2013. 1. 31일까지
4. 신청서 접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 농수산팀 (T.560-4452~4457)  
 서구청 검단출장소 산업팀 (T.560-3224)
5. 사업안내 및 상담기관
  - 서구청 경제지원과(농수산팀)
  - 검단출장소(산업팀) 및 서구농민상담소(검단출장소 내 소재)
  -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및 검단농업협동조합
6. 기타사항
  - 금회 신청되는 사업은 보조예산 등 재정형편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 추진될 수 있음
  - 동 농림수산사업은 총 102종이나 우리 구 특성상 추진가능 한 20종을 공고하며, 기타 사업도 신청자격 및 조건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결격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수가 가능함.
  - ※ 농림수산사업 전체 사업 및 세부추진절차는 붙임 참조 끝.

2012년 12월 31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2014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요약 및 신청자격 안내

| 일련<br>번호 | 단위사업명                              | 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보조비율  | 신청기관 및<br>문의처   | 비고 |
|----------|------------------------------------|---|--|--|---|----|
| 1        | 친환경비료지원사업<br><유기질비료지원>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br>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br>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br>농업을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li> <li>•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퇴비포함)구입비의 일부를 지원</li> <li>• 지원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li> <li>- 부산물비료 : 가축분퇴비, 일반 퇴비</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질비료 1,400원/포(20kg)</li> <li>•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일반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급 : 1,200원/포(20kg)</li> <li>- 2등급 : 1,000원/포(20kg)</li> <li>- 3등급 : 700원/포(20kg)</li> </ul> </li> <li>※ 보조금액은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li> </ul>   | 서인천농협<br>☎ 564-9801<br>검단농협<br>☎ 565-5176<br>인천원예농협<br>☎ 777-9810 |    |
| 2        | 친환경비료지원사업<br><토양개량제<br>(석회·규산) 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성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신청가능)</li> <li>• 지원비종- 논 : 규산   밭 : 석회</li> <li>※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공급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산 : 2,600원/포(20kg)</li> <li>- 석회 : 2,900원/포(20kg)</li> </ul> </li> <li>※ 보조금액은 사업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li> </ul>   | 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5  |    |
| 3        | 친환경농업<br>직접지불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 600천원/ha</li> <li>- 무농약 : 400천원/ha</li> <li>- 저농약 : 217천원/ha</li> </ul> </li> <li>○ 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 : 1,200천원/ha</li> <li>- 무농약 : 1,000천원/ha</li> <li>- 저농약 : 524천원/ha</li> </ul> </li> </ul> </li> <li>• 농가당 지급한도면적 : 0.1(최소)~ 5.0(최대)ha</li> </ul> | 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5  |    |

| 일련<br>번호 | 단위사업명              | 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보조비율  | 신청기관 및<br>문의처   | 비고 |
|----------|--------------------|--|---|--|---|----|
| 4        | 경영이양<br>직접지불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 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촉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 2013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 (1943.1.1~1948.12.31 출생자)</li> <li>- 영농경력 :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액 : ha당 3,000천원/연 (최장 10년까지 가능)</li> </ul>   | 한국농어촌공사<br>김포지사<br>☎031-980-8100                      |    |
| 5        | 경관보전<br>직접지불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li> <li>- 참여농가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li> </ul> </li> <li>재배작물 : 초화류(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자운영등)</li> <li>재식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단위 2ha이상</li> <li>- 집단화 된 경우 0.5ha이상 가능</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비70%, 지방비30%</li> <li>경관작물:170만원/ha<br/>준경관작물:100만원/ha</li> <li>지역별 특성 감안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li> </ul>  | 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3                            |    |
| 6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br>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li> <li>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li> <li>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li> <li>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35,550원/월( '13년 기준)을 지원 (기준소득금액 790,000원이상)</li> <li>기준소득금액 790,000원 미만일때는 보험료의 50%지원</li> </ul> | 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7<br>국민연금공단<br>☎02-2240-1227 |    |

| 일련<br>번호 | 단위사업명                  | 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보조비율   | 신청기관 및<br>문의처  | 비고 |
|----------|------------------------|--|--|---|--|----|
| 7        | 농어업인의<br>건강보험료<br>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28% 지원</li> <li>- 농어촌 지역보험료 22% 별도 경감</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7<br/>건강보험공단<br/>☎02-3276-7863</p> |    |
| 8        | 농업인 자녀 학자금<br>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본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br/>(단, 본인이 농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5</p>                              |    |
| 9        | 농촌출신<br>대학생학자금<br>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li> </ul>  | <p>한국장학재단<br/>☎1666-5114</p>                                     |    |
| 10       | 후계농업<br>경영인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젊은 인재를 적극 발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 우리농업의 지속성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li> <li>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li> <li>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li> </ul> </li> <li>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리 3%, 국고융자 100%</li> <li>-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li> </ul> </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3</p>                              |    |

| 일련<br>번호 | 단위사업명                                    | 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보조비율  | 신청기관 및 문의처                                | 비고 |
|----------|--|--|---|--|---|----|
| 11       | 농산물<br>물류표준화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장비 지원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을 통해 물류이동을 규모화 하고,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해 물류효율화를 촉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작목반, 공영도매시장, 가공공장 등</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기기 구입지원</li> <li>- 물류기기 공동이용에 대한 임차료 일부지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기기 구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30%, 자부담70%</li> </ul> </li> <li>물류기기 공동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50%, 자부담50%</li> </ul> </li> </ul> | 농협중앙회<br>원예특작부<br>☎02-2080-626<br>1       |    |
| 12       | 농어업에너지이용<br>효율화 사업<br><에너지 절감시설<br>설치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필요성이 큰 농, 축, 어가</li> <li>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고효율 난방기 등의 시설설치비의 일부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비보조 : 20%</li> <li>지방비 : 30%</li> <li>융자 : 30%</li> <li>자부담 : 20%</li> </ul>   | 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4                |    |
| 13       | 농어업인<br>재해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사고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안전공제 : 만15세 ~ 84세로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임업인</li> <li>-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li> <li>-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84세 어업인</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 50%, 가입자 50%</li> </ul>  | 서인천농협<br>☎ 575-6611<br>검단농협<br>☎ 562-5171 |    |

| 일련<br>번호 | 단위사업명         | 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보조비율  | 신청기관 및<br>문의처                        | 비고 |
|----------|---------------|--|---|--|--------------------------------------|----|
| 14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보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축산경종농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 및 융자지원비율은 각 시설별로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보조비율 50~100%)</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2</p>  |    |
| 15       | 송아지생산<br>안정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분 보다 낮을 경우 지급</li> </ul> | <p>인천축산업<br/>협동조합<br/>☎ 433-9550</p> |    |
| 15       | 말산업<br>육성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 뒷바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영농조합법인</li> <li>승마시설 설치 및 말구입을 희망하는 비농업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 및 융자지원비율은 각 시설별로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보조비율 40~100%)</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2</p>  |    |
| 16       | 조사료생산<br>기반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업등록농가, 경종농가, 경종과 축산을 함께하는 복합영농 농가, 한우회·낙우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 및 융자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보조30%, 자부담 70%)</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2</p>  |    |

| 일련<br>번호 | 단위사업명                | 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보조비율   | 신청기관 및<br>문의처                       | 비고 |
|----------|----------------------|---|--|---|-------------------------------------|----|
| 17       | 축사시설<br>현대화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지원브랜드경영체” 참여농가, 계열화 참여농가 또는 전업농가</li> <li>한우, 돼지, 닭, 오리, 젓소 축종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 30%,</li> <li>융자 50%,<br/>(연리3%, 3년 거치 7년 상환)</li> <li>자담20%</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2</p> |    |
| 18       | 축산물 HACCP 컨설팅<br>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농가, 축산물영업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 70%, 자부담 30%</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2</p> |    |
| 19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br>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어촌체험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li> <li>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써 마을사무장의 주요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12개월)</li> <li>사 업 량 : 1개소(1명)<br/>- 세어도어촌체험마을(세어도어촌계)</li> <li>사 업 비 : 14,400천원<br/>(국비50% 시비20% 구비20% 자부담10% )</li> <li>채용비용 : 월 120만원/1명</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5</p> |    |
| 20       |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 소유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톤미만 : 50% 보조</li> <li>10톤미만 : 30% 보조</li> <li>30톤미만 : 10% 보조</li> <li>30톤이상 : 5% 보조</li> </ul>  | <p>서구청<br/>경제지원과<br/>☎ 560-4455</p>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21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구청장>

(단위:명)

| 동별       | 청구권자 총수        |                |            | 서명인수          | 최 소<br>서명인수 | 비 고 |
|----------|----------------|----------------|------------|---------------|-------------|-----|
|          | 계              | 19세이상주민        | 등록 외국인     |               |             |     |
| <b>계</b> | <b>355,984</b> | <b>355,864</b> | <b>120</b> | <b>53,398</b> |             |     |
| 검암경서동    | 28,331         | 28,317         | 14         |               | 3,560       |     |
| 연희동      | 35,529         | 35,519         | 10         |               | 3,560       |     |
| 청라1동     | 16,112         | 16,105         | 7          |               | 2,417       |     |
| 청라2동     | 22,827         | 22,818         | 9          |               | 3,425       |     |
| 가정1동     | 10,036         | 10,035         | 1          |               | 1,506       |     |
| 가정2동     | 6,514          | 6,512          | 2          |               | 978         |     |
| 가정3동     | 9,495          | 9,491          | 4          |               | 1,425       |     |
| 신현원창동    | 22,385         | 22,380         | 5          |               | 3,358       |     |
| 석남1동     | 19,798         | 19,787         | 11         |               | 2,970       |     |
| 석남2동     | 13,727         | 13,723         | 4          |               | 2,060       |     |
| 석남3동     | 14,301         | 14,298         | 3          |               | 2,146       |     |
| 가좌1동     | 11,139         | 11,133         | 6          |               | 1,671       |     |
| 가좌2동     | 18,372         | 18,369         | 3          |               | 2,756       |     |
| 가좌3동     | 16,401         | 16,393         | 8          |               | 2,461       |     |
| 가좌4동     | 9,978          | 9,975          | 3          |               | 1,497       |     |
| 검단1동     | 36,882         | 36,869         | 13         |               | 3,560       |     |
| 검단2동     | 17,347         | 17,346         | 1          |               | 2,603       |     |
| 검단3동     | 17,137         | 17,131         | 6          |               | 2,571       |     |
| 검단4동     | 29,673         | 29,663         | 10         |               | 3,560       |     |

※ 산정된 서명인 수 53,398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7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lt;구의원&gt;

(단위:명)

| 구별 | 선거구별 | 읍면동별  | 청구권자 총수 |         |       | 서명인수   | 최 소<br>서명인수 |
|----|------|-------|---------|---------|-------|--------|-------------|
|    |      |       | 계       | 19세이상주민 | 등록외국인 |        |             |
| 서구 | 가선거구 | 계     | 101,039 | 101,009 | 30    | 20,208 |             |
|    |      | 검단1동  | 36,882  | 36,869  | 13    |        | 1,011       |
|    |      | 검단2동  | 17,347  | 17,346  | 1     |        | 1,011       |
|    |      | 검단3동  | 17,137  | 17,131  | 6     |        | 1,011       |
|    |      | 검단4동  | 29,673  | 29,663  | 10    |        | 1,011       |
|    | 나선거구 | 계     | 102,799 | 102,759 | 40    | 20,560 |             |
|    |      | 검암경서동 | 28,331  | 28,317  | 14    |        | 1,028       |
|    |      | 연희동   | 35,529  | 35,519  | 10    |        | 1,028       |
|    |      | 청라1동  | 16,112  | 16,105  | 7     |        | 1,028       |
|    |      | 청라2동  | 22,827  | 22,818  | 9     |        | 1,028       |
|    | 다선거구 | 계     | 26,045  | 26,038  | 7     | 5,209  |             |
|    |      | 가정1동  | 10,036  | 10,035  | 1     |        | 261         |
|    |      | 가정2동  | 6,514   | 6,512   | 2     |        | 261         |
|    |      | 가정3동  | 9,495   | 9,491   | 4     |        | 261         |
|    | 라선거구 | 계     | 70,211  | 70,188  | 23    | 14,043 |             |
|    |      | 신현원창동 | 22,385  | 22,380  | 5     |        | 702         |
|    |      | 석남1동  | 19,798  | 19,787  | 11    |        | 702         |
|    |      | 석남2동  | 13,727  | 13,723  | 4     |        | 702         |
|    |      | 석남3동  | 14,301  | 14,298  | 3     |        | 702         |
|    | 마선거구 | 계     | 55,890  | 55,870  | 20    | 11,178 |             |
|    |      | 가좌1동  | 11,139  | 11,133  | 6     |        | 559         |
|    |      | 가좌2동  | 18,372  | 18,369  | 3     |        | 559         |
|    |      | 가좌3동  | 16,401  | 16,393  | 8     |        | 559         |
|    |      | 가좌4동  | 9,978   | 9,975   | 3     |        | 559         |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22호

## 201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4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명)

| 구 분             | 총 수     | 내국인수    | 국내거소<br>신고재외국민 | 외국인수<br>(영주자격자) | 투표청구<br>주민수<br>(청구인수비율) | 비고 |
|-----------------|---------|---------|----------------|-----------------|-------------------------|----|
| 주민투표<br>청구권자 총수 | 356,755 | 355,864 | 387            | 504             | 29,730(1/12)            |    |

- ※ 내국인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 2012. 12. 31일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 ※ 외국인 : 2012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2013년 1월 4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23호

##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1월 4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단위:명]

| 19세이상의 주민수               |                  |                                | 19세이상의 주민총수<br>④<br>(①+②+③) |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br>(④×1/40) |
|--------------------------|------------------|--------------------------------|-----------------------------|--------------------------------|
| 내 국 인<br>(선거권없는자제외)<br>①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br>② | 외 국 인<br>(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자)<br>③ |                             |                                |
| 355,864                  | 387              | 120                            | 356,371                     | 8,910명                         |